

시행세칙

제 정: 1998.01.07.(이사회 승인)
최근개정: 2026.05.21.(평의원회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철도학회의 정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2조 (회원가입) 본 학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회원관리) 본 세칙 제2조에 따라 회원가입이 승인된 자에게는 입회통지를 하고, 즉시 회원명부 등에 등록한다.

제4조 (회원의 구분) 학회 정관 제6조에 따라 회원은 5종류로 구분하며, 정관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펠로우(Fellow)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원은 특급, 준특급, A급, B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 (회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회비규정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를 둔다.

제7조 (직무의 구분) 부회장과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총무: 인사, 문서, 서무일반, 기획, 섭외, 예산, 결산, 금전보관 및 출납, 각종회의록 작성 등
- ② 기획: 연구기획, 세미나, 강습회 등
- ③ 학술: 연간 학술대회 등 학술사업에 관련한 계획 및 집행
- ④ 편집: 학회지 및 논문집(국문·영문)의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따른 모든 사항
- ⑤ 사업: 조사, 평가, 좌담회, 전학 등 산학협동에 관련한 사업의 계획 및 집행, 특별회원 관리 등
- ⑥ 국제: 국제학술대회, 국제세미나 개최, 국제협력, 해외 교류 사업 등 해외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

제8조 (회무의 보고) 직무별 임원은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무의 인계) 임기종료로 인하여 임원의 이취임시 신·구 임원은 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무 인계·인수를 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임무) 감사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전후하여 회무전반에 관한 내용을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회의) 본 학회는 정관 제4장(회의)에 따라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2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3조 (평의원회의) 평의원회의는 년2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평의원 선출) 평의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평의원은 권리회원이어야 한다.
- ②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③ 역대회장은 회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10년간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④ 선출직 평의원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 소속 권리회원의 투표로 매해 4월 두번째 월요일까지 선출한다.
- ⑤ 평의원 임명 후 결원이 발생하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⑥ 선출직 평의원 선출 세부 절차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의원 선출은 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2. 선출인원 환산비율 산출을 위한 권리회원 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 말일 기준으로 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일로 한다.
 3. 평의원 후보 인원은 분과위원회별 선출인원의 2배수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명부를 일괄 작성하여 선출기한 30일 이전에 각 분과위원장에게 통보한다.
 4. 분과별 평의원 후보자의 선정 기준은 학회 본부임원 횡수(최근 5년간), 분과 임원 횡수(최근 3년간) 순으로 정하며 평의원 후보인원은 동일 소속기관이 1/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5. 분과별 평의원 투표권자는 당해연도 1월 말일 기준 권리회원으로 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일로 한다.
 6. 분과별 권리회원은 해당 분과 선출인원수의 1/2만큼 온라인 직접 투표를 한다. 단,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7. 분과별 평의원은 다득표를 우선으로 하며, 동점자인 경우 4호의 기준을 따른다.
 8.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출기한 이내 투표를 완료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9. 기타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이사회) 이사회는 년4회 이상을 개최하되,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회무 수행 상 필요한 때,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위원회

제17조 (위원회) 본 학회에는 정관 제39조에 따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편집위원회)

- ① 간행물별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위촉하며, 간행물별 편집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2년, 논문집 편집위원장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간행물별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9조(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위촉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은 별도로 정한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승인 후 분과위원회 명단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은 본 세칙 제7조(직무의 구분)을 준용하여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회장이 정하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인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의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6장 지회

제21조 (지회)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강원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제주지회, 대전·세종·충청지회, 광주전남지회, 전북지회를 둔다.

제22조 (지회 운영) 지회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위촉하며, 지회의 조직은 본 세칙 제7조(직무의 구분)을 준용하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지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장 사업

제23조 (간행물) 본 학회는 학회지, 학술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을 등을 발행 할 수 있다.

- ① (발행) 간행물의 발행 횟수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한다.
- ② (배포) 학회지는 권리회원과 회비가 납부상태인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에게 1부씩 배포하되, 특별회원에 한하여 등급별로 배포부수를 달리 할 수 있다. 학술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기증) 학회지, 학술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 (학술대회) 본 학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그 내용은 학술논문, 기술논문, 정책논문, 연구사례, 신기술 소개, 연구동향, 강습회, 초청강연, 연구애로 기술 등으로 한다.

제25조 (강습회) 철도에 관련된 정책, 학술, 기술, 사례 등의 내용으로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계획·집행하며, 수강료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 (조사·평가·연구사업 등)

- ① 본 학회는 타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평가 등의 사업과 기타 필요한 행사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는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학술연구용역 수행 규정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27조 (분회)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고문 및 자문)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고문과 자문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9조 (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세부규정) 학회 운용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1조 (준용) 본 시행세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 상 모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1998.1.7)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1998.1.7)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30.)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8.)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7.)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2.)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6.10.)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23.)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0.)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9.)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7.)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1.)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3.)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의 개정일은 2019년 5월 23일(평의원회 승인) 이다.

제2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8일자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의 개정(안)이 평의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9.9.6)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20.)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03.)

제1조 (개정일) 이 시행세칙의 개정일은 2023년 11월 3일(평의원회 승인)이며,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외적용) 상기 개정일 및 시행일(2023.11.03.)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이 시행세칙 제14조(평의원 선출)는 2025년부터 선출되는 평의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 (2024.11.22.)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7.2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5.2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